

	<h1>학 칙</h1>	규정번호	2-0-1	
		제정일자	1999.08.01.	
		개정일자	2014.06.01.	
		개정번호	Ver.21	총페이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대학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대학은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위치) 본 대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45에 둔다.

제4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계열	학과명	입학정원		
		주간	야간	계
공학	기계과	200		200
	기계설계과	160		160
	자동화시스템과	126		126
	로봇시스템과	60		60
	전기시스템과	161		161
	정보전자과	120		120
	반도체전자과	80		80
	정보통신과	160		160
	인터넷정보과	120		120
	소프트웨어정보과	120		120
	생명화공과	160	40	200
	건축과	160		160
예체능	실내디자인과	80		80
	시각디자인과	80		80
인문사회	경영과	80		80
	세무회계과	70		70
	유통마케팅과	40	40	80
	관광경영과	80	40	120
	e-비즈니스과	120		120
계		2,177	120	2,297

제4조의 2 (정의) ① “전문학사과정”이라 함은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

한다.

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으로서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제 2 장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제5조 (수업년한) ① 본 대학 전문학사과정의 수업년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

② 학위 과정별 수업년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학사과정의 자동화시스템과, 로봇시스템과,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정보과, 건축과, 실내디자인과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하되 그 외의 학과는 2년으로 한다.
2.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자동화시스템공학과, 소프트웨어정보학과, 건축학과, 실내디자인학과, 정보통신공학과와 수업년한은 1년으로 하되 그 외의 학과는 2년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제로 입학한 자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한다.

③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재학년한) 재학년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 (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8조 (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제 1 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 2 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일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과에 따라 실습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별도반 시간제등록생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학습과정과 동일한 시간으로 하되 4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개교기념일 : 5월 20일
2. 일 요 일
3. 국정공휴일

- ②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매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입 학 (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11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입학자격) ① 전문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단, 건축학과는 전문대학 또는 학력 인정과정 입학 후 산업체 관련분야에서 1년(전년도 졸업자는 졸업 후 9개월)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13조 (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4조 (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매 학년도 총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입학전형계획 수립 후 7일 이내에 공고한다.

제15조 (입시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시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과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의 2 (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시 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과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7조 (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취소할 수 있다.

1. 이중학적을 가진 자
2. 입학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제18조 (편입학) ① 전문학사과정은 전문대학 및 대학 1년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 2학년 1학기에 편입학할 수 있고, 전문대학 및 대학2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 3학년 1학기에 편입학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학생과 군복무중 폐과된 과의 학생의 편입학은 학기초에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국내 타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이직 또는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편입학할 수 있다.

③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19조 (재입학) ① 제적 및 퇴학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개편된 학과 또는 타 학과로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③ 2001학년도 이전 전문학사과정의 2년제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자퇴 혹은 제적되었다가 수업년한이 3년으로 연장된 학과에 재입학하는 경우는 3년제 학과에 소속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학칙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동일학과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산업체위탁교육) ① 전문학사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타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전공심화과정) 본 대학에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계속교육 기회 확

대를 위하여 1년이내의 비학위전공심화과정과 1년 이상의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비정규 특별과정) ① 본 대학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3조 (시간제등록) ① 시간제등록생의 모집인원은 본 대학 정규과정과 통합하여 수업하는 시간제등록생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하고 별도반 시간제 등록생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이내로 한다. 단 전체 시간제등록생의 모집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간제등록생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취득학점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 절차 등을 전형자료로 하며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자는 소정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된 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기일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장 휴학, 퇴학, 전과 및 제적

제25조 (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본인 혹은 다른 학생의 수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③ 휴학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26조 (복학)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종료 또는 휴학사유 해소 후 다음 학기 개학 전에 복 학절차를 취해야 한다. 다만 학기 개학 후 3주 이내에 복학이 가능한 자는 금번 학기에 복학할 수 있다.

- ② 일반 휴학중인 자로서 휴학기간을 연기하지 아니하고 군에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제대 후 복학하는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하여 군입영 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2001학년도 이전 전문학사과정의 2년제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수업년한이 3년으로 연장된 학과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수업년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7조 (전과)** ① 전문학사과정의 교내전과(이하“전과”라 한다)는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 학기에 한해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수업년한이 3년인 학과의 전과는 2학년 2학기초에도 허가할 수 있으며, 폐과에 의한 경우는 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전과는 불허하며, 복학자로서 폐과에 의한 경우에 한해서 허가할 수 있다.
 - ③ 전과한 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전과한 자의 기 취득학점은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 (퇴학)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 무상한자
4.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제 6 장 교과 및 수업

- 제30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 및 일반선택교과로 구분하며,학과의 특성에 따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교직교과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전문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각 학과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교과 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전문학사과정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③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생은 매학기 10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8학점 이상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0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전문학사과정에서 타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 연구 또는 실습 등을 수행한 경우 연관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하며 이수과목의 지정, 성적 부여 등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의 2 (학점의 인정) 국내·외의 다른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본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본 대학 또는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교양학점 인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산업체위탁생으로 입학한 자의 현장실무에 따른 학점 인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편입학생의 기취득 학점 인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학점은행제에 의해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본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국내·외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환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본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대학 또는 국내·외의 고등학교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5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7. 제 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환학생의 취득학점 인정 및 수학기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8.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9.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학점인정은 1년 과정은 120학점, 2년 과정은 80학점까지만 인정한다.
10. 제8호의 학점인정 상한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연(년) 6학점 이내로 한다.

제32조 (수업) ① 수업은 주간, 야간, 방송·통신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8:00부터

23: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33조 (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 (수강신청) 본 대학 학생은 교과목 수강을 위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하며 수강신청의 일정,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완성직업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계고등학교, 4년제대학 또는 산업체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 (가상강좌 및 공개강좌) ① 본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는 가상강좌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본 대학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강좌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37조 (평가시험) ① 성적평가는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38조 (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 적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0급 이상으로 한다.

등 급	배 점	평 점
A +	95 - 100	4.5
A 0	90 - 94	4.0
B +	85 - 89	3.5
B 0	80 - 84	3.0
C +	75 - 79	2.5
C 0	70 - 74	2.0
D +	65 - 69	1.5
D 0	60 - 64	1.0
F	0 - 59	0
P		불계

- ③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성적 배점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⑤ 각 교과목 총수업 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해서 당해 교과목의 학업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⑥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할 수 있다. 이때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하되 취득학점은 인정한다.

제39조 (진급조건) 전문학사과정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서 진급할 수 있는 조건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0조 (성적의취소)**
- ①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 ② 학생의 포기신청에 의하여 기취득한 학점을 취소할 수 있으며 포기절차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 (졸업)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전공 최저 이수학점 범위등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① 전문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수업년한이 2년인 학과는 80학점 이상으로 하고, 3년인 학과는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전문학사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

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1조에 의한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42조의 2 (학위수여) ① 전문학사과정을 이수하고 제42조 제1항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지 1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제 42조 2항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는 별지1-1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 1-1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1997학년도 이전에 졸업한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별표 1에도 불구하고 학과 명칭은 졸업 당시 학과명을 사용한다.

제42조의 3 (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3호의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전문학사과정의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년 수료 : 40 학점 이상
2. 2 학년 수료 : 80 학점 이상
3. 3 학년 수료 : 120 학점 이상

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년 수료 : 20 학점 이상
2. 2 학년 수료 : 60 학점 이상

제43조 (학점은행제) ① 총장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장 학 생 활 동

제44조 (학생회조직) ① 본 대학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함을 목적으로 본 대학에 학생회를 설치하며, 학생회의 운영과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학생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45조 (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 (학생회 이외의 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임의의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학생활동의 금지사항) ① 회원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 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생 자치기구의 성격을 넘는 학교운영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다.

② 학내에서는 학생의 본분을 망각한 일체의 상행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금품수수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학생은 성폭력을 해서는 안되며, 이에 관련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 (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학년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를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위원회를 두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50조 (간행물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편집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실, 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중견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52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53조 (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퇴학에 해당하는 처벌에 대해서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이 학칙을 위반한 자
 2. 무계출 결석이 4주간을 초과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 10 장 등 록 금

제54조 (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시기에 총장이 정한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등록금 중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반환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의2 (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의3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의 등록금을 심의 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정수는 1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구성단위별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대표 4명(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1명을 포함할 수 있음)
2. 학생대표 3명(학생대표는 원칙적으로 총학생회장, 대의원의장, 학회장연합회 회장을 위촉한다)

3. 관련 전문가 3명(동문대표 1명 포함)

③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 (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11 장 장 학 금

제56조 (장학금) ①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평균 B0급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업성적이 평균 C0급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극빈한 자
3. 기타 장학규정에 해당하는 자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 12 장 교 수 회 및 제 위 원 회

제57조 (교수회) ① 본 대학에는 교수회를 두며 총장, 부총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교원으로 구성하되 그 직무가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모두를 포함한 교원으로 한다. 단, 교수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외의 교원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교수회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단,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 또는 직무 대행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③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평의원회 교원 대표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및 개정 발의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주요 사항
4. 학부, 학과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7조의2 (직원회) ① 본 대학에 직원회를 둔다.

- ② 직원회는정관에서 정하는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직원회는 총장이 필요할 때 또는 직원회 구성 인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사무처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8조 (교무위원회 및 학부장회) ① 본 대학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 및 학부장회를 둔다.

- ② 교무위원회 및 학부장회의 구성, 임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교무위원회 및 학부장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교무위원회 및 학부장회는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종합 심의한다.

제59조 (제위원회) 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3 장 직 제

제60조 (교직원) ① 본 대학에는 총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의 교원과 조교 및 사무직원을 둔다.

- ② 교직원의 임무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61조 (직제) ① 본 대학에는 교학처, 산학협력처, 기획처, 사무처를 둔다.

- ② 각처에 처장과 부처장을 보할 수 있으며,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③ 각처 및 실의 사무 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 14 장 부속기관 및 부속시설, 산학협력단

제62조 (부속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종합정보지원실
2. 교수학습개발센터
3. 국제학술교류센터
4. 예비군연대
5. 동양미디어

- 6. 산업기술연구소
- 7.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 8. NCS교육운영지원센터
- ② 부속 및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63조 (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설치 운영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5 장 학칙 개정 절차

제64조 (학칙 개정의 발의) 학칙의 개정은 총장 또는 교수회 구성 인원의 5분의1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65조 (학칙의 개정 절차)** ① 학칙의 개정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교직원에게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 ③ 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학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학칙 공포 이전에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거친 학칙 제·개정안은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⑥ 총장은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칙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학평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 (개정 학칙의 공포) 개정이 확정된 학칙은 지체없이 공포한다.

제67조 (시행일) 공포된 학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16 장 보 칙

제68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9조 (자체평가)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의거하여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② 자체평가 결과는 ①항에 규정된 대학의 정보 공개 및 대외평가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 8.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학부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전기과, 전자과, 전자통신과 재적생은 전기.전자.통신공학부에 전산사무자동화과, 경영정보시스템과, 인터넷정보과 재적생은 전산.경영기술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 (3)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공업화학과의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개편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경영정보시스템전공의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전자상거래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명 변경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기계설계과, 공장자동화과, 공장자동화과의 제어계측전공, 전산경영기술공학부, 건축과의 실내건축전공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학부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당시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3) **(학과명 변경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당시 전기과, 전자과, 전자통신과, 테크노경영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4) **(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당시 컴퓨터정보과, 멀티미디어정보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통합된 소프트웨어정

보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5) (컴퓨터제어전공, 메카트로닉스전공, 무선정보통신전공, 정보네트워크전공, 소프트웨어정보과, 건축과, 실내건축과의 수업년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 한다.

②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2년제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교과목이 폐과목되었거나 학기변동되었을 때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규정 경과조치) 2001학년도 후기 졸업자를 포함한다.

(3) (컴퓨터제어전공, 메카트로닉스전공, 무선정보통신전공, 정보네트워크전공, 소프트웨어정보과, 건축과, 실내건축과의 수업년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년간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수업년간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2년제 또는 3년제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교과목이 폐지되었거나 학기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한다.

(4) (학과명 변경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디지털경영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디지털경영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5) (유급 조항 폐지 및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조항 대체에 따른 경과 조치) 제43조(유급) 소정의 학점미달자와 진급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유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폐지하고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 조항으로 대체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명 변경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 정보전자전공, 전자상거래과, 인터넷정보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정보네트워크전공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납입금 반환에 따른 경과조치) 제54조 ④항 납입금 반환에 대한 사항은 2004년 2학기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보직교원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편된 부속시설에서 근무중인 직원은 이 학칙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 명칭 변경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기계과 기계시스템전공, 기계과 엔지니어링디자인전공, 기계설계과 제품설계전공, 기계설계과 시스템설계전공, 전기시스템과 전기시스템전공, 전기시스템과 디지털전기제어전공, 정보전자계열 디지털전자전공, 정보전자계열 반도체전자전공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 명칭 변경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전기계열 전기시스템전공, 전기계열 로봇제어전공, 전자계열 정보전자전공, 전자계열 반도체전자전공, 경영계열 디지털경영전공, 경영계열 비서행정전공, 경영계열 벤처경영전공, 경영계열 유통마케팅전공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자동화시스템계열 컴퓨터제어전공, 자동화시스템계열 메카트로닉스전공, 정보통신계열 무선정보통신전공, 정보통신계열 네트워크정보통신전공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 명칭 변경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로봇제어과, 모바일인터넷과, 경영과, 응용화학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실내건축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3) **(로봇제어과의 수업년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에 로봇제어과로 입학한 자의 수업년간은 2년으로 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로봇시스템과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동양공업전문대학의 재적생은 동양미래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종전 동양공업전문대학에서 발행한 제 증서 및 증명서는 동양미래대학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 증명서 발급시 2015학년도까지는 대학명칭으로 동양공업전문대학명을 병기할 수 있다.
- (3) **(학과통합에 따른 학과명 변경관련 경과조치)** 무선정보통신과 및 네트워크정보통신과에 입학한 재적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2012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이 학칙에 의거 정보통신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당시 인터넷비즈니스과 재적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2011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e-비즈니스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11년 3월 17일(정관개정일)부터 “총장” 명칭으로 시행한 모든 행정적 처리는 개정된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동양미래대학의 재적생은 동양미래대학교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종전 동양미래대학에서 발행한 제 증서 및 증명서는 동양미래대학교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③ 2012년 4월3일부터 “동양미래대학교” 명칭으로 시행한 모든 행정적 처리는 개정된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문학사 학위의 종별

종별	해당학과	비고
공업전문학사	기계과, 기계설계과, 자동화시스템과, 전기시스템과, 로봇시스템과, 정보전자과, 반도체전자과,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정보과, 생명화학공과, 건축과, 인터넷정보과	
경영전문학사	경영과, 세무회계과, 유통마케팅과, e-비즈니스과	
관광전문학사	관광경영과	
산업예술전문학사	시각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별표1-1】

학사 학위의 종별

종별	해당학과	비고
공학사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자동화시스템공학과, 전기시스템공학과, 정보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소프트웨어정보학과, 생명화학공과, 건축학과, 인터넷정보학과	
경영학사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미술학사	실내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별지 1)

제 호

졸업증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 학년도 본 대학 ○○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
서를 수여함.

○○○○년 ○월 ○○ 일

동양미래대학교총장

학위등록번호 :

(별 지 1-1)

제 호

졸업증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 학년도 본 대학 ○○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 일

동양미래대학교총장

학위등록번호 :

(별 지 2)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 학년도 본 대학 ○○ 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
서를 수여함.

○○○○ 년 ○○ 월 ○○ 일

동양미래대학교총장

학위등록번호 :

(별 지 3)

제 호

수료증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본대학 ○○○○학위 과정 ○학년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 일

동양미래대학교총장 (인)